**월세 미납에 의한 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

안녕하세요,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월세계약의 임대인입니다.

월세계약은 2021년 10월 5일에 체결되었고, 임차인은 매월 5일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2022년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6월경 월세 납부 최고 요청을 받으셨음에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납된 총 월세 21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셔서 이 문자를 받으신 7월 1일부로 위 월세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세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즉시 주택을 원상복구하여 저에게 반환해주시고 퇴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서 미납된 월세 210만원, 7월 1일까지 부과된 관리비 및 공과금 합계 30만원,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7월 1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지 않으시면 보증금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월임대료 만큼이 추가로 공제되므로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